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차규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549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혜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차규근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5. 19.
3. 회 부 일 : 2025. 5.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습기 살균제 사건,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사모펀드 부실판매 및 거짓운용 사건, 가짜뉴스 및 안전기준 위반의 대규모 참사 사고 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윤추구를 본질로 하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추구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악의적 위법행위를 사전에 억지하고, 해당 위법행위로부터 얻어진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악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유인 자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인의 상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66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개정안은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과하려는 내용으로, 상인들의 악의적 위법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이익을 사후적으로 박탈함으로써 해당 행위를 억지하려는 취지로 보임(안 제6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66조의2(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 ①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상인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② 제1항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소(訴)로써만 행사할 수 있다.</u> <u>③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u>

현 행	개 정 안
	<u>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u> <u>1. 고의 및 중과실의 정도</u> <u>2. 발생한 손해의 정도</u> <u>3. 상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u> <u>4. 상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내용 및 정도</u> <u>5. 상인의 재산상태</u> <u>6. 상인이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u> <u>④ 제1항의 배상책임을 미리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u> <u>⑤ 이 조는 손해배상책임을 정하는 다른 법률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u>

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란 영미법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전보적(compensatory) 또는 명목적(nominal)인 일반적인 손해배상과는 달리 ① 무자비한(outrageous) 행위를 한 자를 징벌·제재

하고 ② 추후에 행위자나 그 외의 다른 자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지하고 효과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손해배상을 의미함.

- 징벌적 손해배상은 통상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피해자가 받은 손해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행한 행위의 부당성, 비행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준 형사적인(quasi-criminal)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하급심 판결은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손해의 전보만을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민사법 체계에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징벌적 성질을 갖는 배상형태라 보고, 일부 개별 법률에서 이를 인정(발생한 손해의 3배 또는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배상책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¹⁾

1) 수원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20나102966 판결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에게 특히 고의 등의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에 덧붙여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동종행위의 억지를 주목적으로 하여 과하여지는 손해배상으로서 코몬 로(common law)상 인정되고 있는 구제방법의 일종인바, 이는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손해의 전보만을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민사법 체계에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징벌적 성질을 갖는 배상형태라고 할 것이다. 다만 (중략) 일부 개별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별 법률이 규율하는 구체적인 위법행위의 유형들에 대하여 입법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특별히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손해발생 전의 상태로의 회복에 목적이 있는 우리 손해배상 체계에서 위법행위의 유형에 불문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와 관련하여 입게 된 손해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안이 아닌 이상, 설령 원고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한편, 지난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기 이전의 하급심 판례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우리의 민사법 체계에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형벌적 성질을 갖는 배상형태로서 공서양속에 반할 수가 있다고 보았음.²⁾

□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다른 나라의 규율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영국의 경우 ① 가해자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자의적, 억압적 또는 반헌법적인 행동을 한 경우 또는 ②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그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불법행위를 한 경우 또는 ③ 개별 법령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됨.

-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최후의 수단임을 전제로, 전보적 혹은 가중사유가 있는 손해배상으로 징벌적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피해자만이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함.

- 그리고 배상액은 해당 금액이 가해자의 징벌에 적절한 금액인지를

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5. 2. 10. 선고 93가합19069 판결 “징벌적 배상이란 가해자에게 특히 고의 등의 주관적인 악사정이 있는 경우에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에 덧붙여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동종행위의 억지를 주목적으로 하여 과하여지는 손해배상으로서 코몬로상 인정되고 있는 구제방법의 일종인바, 이는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손해의 전보만을 인정하는 우리의 민사법 체계에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형벌적 성질을 갖는 배상형태로서 우리나라의 공서양속에 반할 수가 있으므로 이 사건 미국판결에 과연 이러한 징벌적 배상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기준으로 산정됨.

○ 미국의 경우, 법원이 재판실무로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³⁾과 성문법상의 배액배상제도로 나누어 관련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먼저,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은 판례들마다 다소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① 원인이 되는 사건의 존재, ② 가해자의 비난가능한 행위 존재 및 ③ 실제 손해가 존재해야 하고 해당 행위로 인한 가해자의 이익 수취로 볼 수 있음. 법원은 배상액 산정에 있어 ① 가해자의 비난가능성, ② 가해자의 재산상태, ③ 가해자가 얻은 이득, ④ 소송비용, ⑤ 잠재적 손해, ⑥ 관련 소송의 존재 여부, ⑦ 다른 제재의 존재 등을 고려하고 있음.

- 다음으로, 미국 반독점법⁴⁾ 등에 규정되어 있는 성문법상 배액배상

3) 이른바 “코먼로 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임.

4) 15 U.S. Code § 15 – Suits by persons injured

(a) Amount of recovery; prejudgment interest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b), any person who shall be injured in his business or property by reason of anything forbidden in the antitrust laws may sue therefor in any district court of the United States in the district in which the defendant resides or is found or has an agent, without respect to the amount in controversy, and shall recover **threefold the damages** by him sustained, and the cost of suit, including a reasonable attorney's fee. The court may award under this section, pursuant to a motion by such person promptly made, simple interest on actual damages for the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of service of such person's pleading setting forth a claim under the antitrust laws and ending on the date of judgment, or for any shorter period therein, if the court finds that the award of such interest for such period is just in the circumstances. In determining whether an award of interest under this section for any period is just in the circumstances, the court shall consider only- (이하 생략)

제도(statutory multiple damages)란 연방 혹은 주의 성문법에 실 손해의 2배 혹은 3배로 규정된 법정손해배상을 의미하고, 이러한 배액배상제도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보고 있음.

- 배액배상제도는 손해배상과는 달리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의 고의 혹은 초과주관적 요소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있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해당 법률이 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법정된 배수를 그대로 곱해서 배액배상을 하거나 혹은 그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법관의 재량으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계약책임 불이행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1993년부터 개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규정하였고, 이후 식품안전법 등의 경우 배상책임을 강화하였으며, 추후 해당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개별법규가 점차 확대될 추세에 있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음.

-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⁵⁾을 시작으로 특정 위법행위에 대해 발생한 손해의 3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475호, 2011. 3. 29, 일부개정]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②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⁶⁾」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⁷⁾」 등 공정거래 분야와 「특허법⁸⁾」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⁹⁾」 등의 지식재산 분야,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¹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¹¹⁾」 등 개인정보 분야, 「환경보건법¹²⁾」 등 환경 분야와 「제조물책임법¹³⁾」 등

-
- 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손해배상 책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자가 제6조, 제7조 또는 제12조를 위반하여 대리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공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손해배상책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제40조, 제48조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상액은 해당 사업자가 제40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8)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 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⑥ 법원은 제2조 제1호차목의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 10)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손해배상의 책임) ②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2) 「환경보건법」 제19조(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② 제1항의 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손해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비자보호 분야 등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 또는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 또는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구체적 검토

□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과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① 상인은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동종의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상행위의 주체¹⁴⁾로서, 해당 위법 행위를 통하여 이윤을 획득할 동기가 기본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것이며 ② 또한 상인은 다수와 거래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범위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확대될 우려가 있고, ③ 특히 기업화된 상인의 경우 위법행위에 관한 증거가 상인 측에 편재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측면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적용대상의 명확화 및 법체계의 정합성 확보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첫째, 개정안은 상인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13)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4)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경우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이 법은 당사자의 일방에게만 상행위인 경우인 “일방적 상행위¹⁵⁾”와 당사자 쌍방이 모두 상인인 경우의 “쌍방적 상행위¹⁶⁾”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 행위를 명확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음.¹⁷⁾

○ 둘째,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상인의 모든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초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입법례는 적용 대상 행위를 명백한 위법성의 인식이 있거나 악의에 기초한 행위로 한정하여 규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제2항¹⁸⁾의 경

15) 「상법」 제3조(일방적 상행위)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 법을 적용한다.

16) 「상법」 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17) 통상 상거래에 임하는 당사자들은 합리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고 그 사이에 대등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되므로, 이 법은 특히 당사자 쌍방이 모두 상인인 경우를 당사자 중 일방만이 상인인 경우와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손해배상책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제40조, 제48조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상액은 해당 사업자가 제40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호 생략)

제48조(보복조치의 금지) 사업자는 제45조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제46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담합) 및 신고자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정하고 있음.¹⁹⁾

□ 한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 또는 상인이 그 원인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부과하는 같은 취지의 의안 1건²⁰⁾이 2026. 2.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문 의 처

02)6788-5055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호 생략)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당사자들에게 명백한 위법성의 인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로, 미국 반독점법의 집행에 있어서도 가격결정 담합 등은 당연 위법(per se illegal)으로 판단되는 행위임. 또한,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보복조치는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상대방 사업자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가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통상적인 고의를 넘어선 악의에 기초한 행위로 이해할 수 있음.

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3634호, 2025. 10. 17. 발의)